2021.03.23.

질병관리청

안녕하세요!

우리 매장의 동시 이용 가능한 인원은

사회적 거리 두기 [ ] 단계에서는

최대 [ ] 명입니다.

목욕탕·사우나에서의 생활방역수칙

아래 생활방역수칙을 꼭! 지켜주세요.

- **코로나19 증상*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**
  - 주요증상: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두통, 인후통, 후각 미각 소실 등
- **출입자 명부** QR 코드, 안심전화 등 **작성하기**
- **항상 마스크 착용하고,** 공용공간, 탈의실 등 **대화 자제하기**
- **가급적 짧게 머무르기**
- **이용자 간 2m (최소 1m) 이상 ↔ 거리두기**
- **음식 섭취하지 않기** 물, 무알콜 음료 제외

-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할 수 있음
-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과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(ncov.mohw.go.kr)에서 확인하기

Q.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?

-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「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, 「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」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.

<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>	
보상종류	-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, 사망·장애일시보상금 및 장제비
보상대상자	-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(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-9호)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대상자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
보상신청 유효기간	-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
보상신청 가능 횟수	-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,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

Q.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요?

-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 후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습니다.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접종 관련 증상으로 기침, 후각 또는 미각 손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.

- 이들 증상이 발생한다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 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.

(출처: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페이지, '21.3.30.)
(출처: 질병관리청 홍보자료,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(포스터) '21.3.25.)